



재정운영위원회 규정

규정번호	4-1-46
제정일자	2020.12.15.
개정일자	2022.06.02.
책임부서/팀·계	기획처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신안산대학교 운영에 필요한 재원의 확보와 효율적 재정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는 재정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기능) ① 재정운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.)는 신안산대학교(이하 “본 대학”이라 한다.)의 사명과 교육목표 달성을 위하여 예산편성 및 재정운영이 합리적이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.

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자문한다.

1. 대학의 장·단기 재정 운용 계획에 관한 사항
2. 예산 편성의 합리성, 효과성 및 결산의 적절성에 관한 사항
3. 합리적인 재정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
4. 상위법령에 의한 대학 재정 운영의 준수에 관한 사항
5. 기타 총장이 자문을 요구하는 사항

제3조(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위원장은 기획처장으로 한다. <2021.08.20. 개정><2022.06.02. 개정>

② 위원회는 기획처장, 민주노총 전국대학노동조합 신안산대학교 지부에서 추천하는 대표 1인을 당연직으로 하며, 총장이 임명하는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 <2021.08.20. 개정><2022.06.02. 개정>

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둘 수 있으며, 간사는 기획처 담당자로 한다. <2021.08.20. 개정>

제4조(임기) 위원회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. 단 보직자는 보직재임기간으로 하며,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임명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
제5조(회의)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.

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6조(회의록) 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출석위원의 서명을 받아 보관하며,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제7조(비밀유지) 위원은 위원회 활동 중 취득한 내용에 대하여 직무상의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.

제8조(기타)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0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1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2년 6월 2일부터 시행한다.